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33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백혜련 · 김남희 · 박지원
서영석 · 민홍철 · 이수진
이재정 · 남인순 · 강준현
윤종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인지할 경우 경찰신고체제로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실종아동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종아동등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 · 보호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현행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
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u><신설></u>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u><신설></u>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

<u><신 설></u> 6. (생 략) ② ~ ⑥ (생 략)	<u>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u>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0.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